

의안번호	제629호
의결 연월일	2014년 월 일 (제328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9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조문 정비와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위임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조문정비(안 제1조~제3조)

- 목적, 권한위임사항, 감독

### □ 부서명칭 변경(안 별표 1) : 농산지원과 → 유기농산과

###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1)

####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권한 위임사무 신설 : 19건

- 경제정책과(5건) :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
- 기업유치지원과(1건)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사무
- 산림녹지과(12건) : 산지관리에 관한 사무
- 교통물류과(1건)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사무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삭제 : 15건

##### ※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과(3건) :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한약업사의 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 허가
- 원예유통식품과(2건) :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 균형개발과(1건) :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결정 및 변경
- 교통물류과(9건) : 자동차등록사무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무,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등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를 “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중 식품의약품안전과 경제정책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산지원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교통물류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원예유통식품과란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u>충북도립 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 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북부 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u>,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u> ----- ----- ----- ----- ----- ----- ----- ----- ----- ----- -----</p>
<p>제2조(권한위임사항) ①~③ (생략)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u>충북도립 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u>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⑤~⑦ (생략)</p>	<p>제2조(권한위임사항) (현행과 같음) ④ ----- <u>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u> ----- ----- ----- ----- ----- ----- ----- ----- ----- (현행과 같음)</p>
<p>제3조(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u>충청북도</u>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생략)</p>	<p>제3조(감독) ① ----- <u>도지사</u> ----- ----- ----- ----- ----- 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품의약품안전과	<u>1</u>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u>2</u>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u>3</u>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u>4</u>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u>5</u>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u>6</u>	·마약의 소매 보고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u>7</u>	·행정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u>8</u>	·청문(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5조
	<u>9</u>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u>10</u>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경 제 정 책 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 사업에 관한 권한 가. 사업(변경) 허가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해임 요구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34조
	5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6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 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u>7</u>	<u>협동조합에 관한 업무</u>  가. <u>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u> 나. <u>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u> 다. <u>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u> 라. <u>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u> 마. <u>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u>	<u>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u> <u>같은 법 제16조</u> <u>같은 법 제56조</u> <u>같은 법 제57조</u> <u>같은 법 제119조</u>
기업유치 지원과	1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u>2</u>	<u>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u>
<u>유 기 농 산 과</u>	1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2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3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 미만) 개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4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5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6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산림녹지과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2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
	3	·종묘생산업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같은 법 제16조
	5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법 제8조
	6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7	·간선임도 설치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8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9	· <u>산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u> <u>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u> <u>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u>	<u>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u> <u>같은 법 제37조</u>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u>다. 복구비의 예치 등</u> <u>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 명령 및 복구 의무의 면제</u> <u>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u> <u>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u> <u>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u> <u>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령 및 예치면제</u> <u>자. 복구비의 반환</u> <u>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u> <u>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u> <u>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u>	<u>같은 법 제38조</u> <u>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u> <u>같은 법 제40조</u> <u>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u> <u>같은 법 제41조</u> <u>같은 법 제42조</u> <u>같은 법 제43조</u> <u>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u> <u>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u> <u>같은 법 제49조, 제57조</u>
균 형 개 발 과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li> <li>·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 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li> <li>·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 주차장</li> <li>다. 궤도</li> <li>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li> <li>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li> <li>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li> <li>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 공동구</li> <li>자. 공공공지</li> <li>차. 수도공급설비</li> <li>카. 전기공급설비</li> <li>타. 가스공급설비</li> <li>파. 방송·통신시설</li> <li>하. 시장</li> <li>거. 열공급설비</li> <li>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li> </ul> </li> </ul> </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더. 운동장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머.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봉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7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8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9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10	행정처분 및 명령(사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1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1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3	<p>다. 준공검사</p> <p>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p> <p>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p> <p>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p> <p>·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p> <p>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p> <p>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p> <p>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51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3조</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p> <p>같은 법 제16조의2</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p>
교 통 물 류 과	1	<p>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p> <p>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p> <p>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p> <p>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p> <p>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p> <p>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p> <p>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 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p> <p>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p> <p>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p> <p><b>차.</b>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p> <p><b>카.</b>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p> <p>2.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p> <p>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p> <p>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p>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p> <p>자동차관리법 제14조</p> <p>자동차관리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0조, 제21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p> <p>자동차등록령 제31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같은 법 제3조, 제5조</p> <p>같은 법 제6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9조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재검 명령등	같은 법 제11조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수리, 지정 취소	같은 법 제8조의2
		<u>아.</u>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u>자.</u>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같은 법 제34조의2
		<u>차.</u> <u>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u>	<u>같은 법 제35조의2</u>
	<u>3</u>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u>4</u>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변경신고, 폐지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u>5</u>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u>6</u>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u>7</u>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 관련법령 발췌

### 공통사항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과

#### □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경제정책과

###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관) ①~②** (생략)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기업유치지원과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에유통식품과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산림복지과

###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 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 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균형개발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⑥ (생략)**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 교통물류과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제2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시·도지사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